

21. 老人福祉法中 改正法律

法律 第4,633號, 1993. 12. 27

제11조(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지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이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증진을 자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노인복지시설”을 “시설 및 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동항제7호를 제5호로 하며, 동항제8호 중 “노인복지주택”을 “실비노인복지주택”으로 하여 동호를 제6호로 한다.

제19조의2·제19조의3·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유료노인복지시설) ①유료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

다.

1.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2.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시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3.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을 입소시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②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대상·입소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험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②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험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재가노인복지사업) ①재가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가정봉사원과견사업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

2. 서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

3. 단기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내용 및 대상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 ①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과 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여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허가의 취소등) ①시·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시·도지사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입소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그 운영에 있어 입소노인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③시·도지사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사업대상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운영에 있어 사업대상노인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호중 “이유없이”를 “사유없이”로, “거부하거나”를 “거부·방해하거나”로 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청문) 시·도지사는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1항단서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 제2항본문중 “노인복지주택”을 “실비노인복지주택”으로, 동항단서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의3제1항”으로,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법인은”을 “유료양노시설·유료노인의료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의한 편의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중 “운영”을 “운영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노인복지명료지도원) ①복지 실시기관은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노인복지명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벌칙)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하거나 운영한 자

2.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한 자

제34조중 “제32조 또는 제33조”를 “제32조・제32조의2 또는 제33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주택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실비노인복지주택으로 본다.

□ 개정이유 □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사원복지법인이 아닌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의3).
- 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서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하고, 사업실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함(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 다. 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절차를 규정함(법 제25조의2).

〈법제처 제공〉

우리집 쓰레기가 우리집 의식수준